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한글날에 대한 요일제 도입〉

■ 위성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522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한글날에 대한 요일제 도입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위성락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7. 9.
3. 회 부 일 : 2024. 7.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글날을 10월 9일로 정하고 있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한글날 등의 국경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진작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요일제 공휴일 도입이 19대 국회부터 제안된 바 있으나, 2021년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해당 내용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연구원 등의 연구에 따르면 대체공휴일로 인해 생긴 3일 연휴기간 동안 관광산업 분야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관광 이외의 다양한 산업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한글날을 10월 두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2조 제5호).

Ⅲ. 검토의견

1. 한글날에 대한 요일제 도입

개정안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등을 방지하고 공휴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글날을 10월 9일에서 10월 두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고자 함(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u>한글날: 10월 9일</u>	제2조(국경일의 종류) ----- -----. 1. ~ 4. (현행과 같음) 5. <u>한글날: 10월 두 번째 월요일</u>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우리나라는 날짜 기준으로 공휴일을 정하고 음력 날짜로 지정된 공휴일(설날, 추석, 석가탄신일 등)이 많아 공휴일의 중복가능성과 가변성이 높음. 이에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¹⁾

다만, 대체공휴일은 모든 공휴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공휴

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7.7. 제정)되면서 대통령령을 함께 개정하여 설연휴와 추석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었던 대체공휴일을 제헌절을 제외한 국경일에도 확대하여 적용하였음.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공휴일 중복으로 인한 공휴일 수 감소 등 날짜 지정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요일제공휴일의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미반영되었음.²⁾

<대체공휴일 운영 현황>

공 휴 일	지정 방식	비 고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12월 25일	토요일,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u>한글날</u>	토요일,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21.7) 대통령령을 개정하면서 대체공휴일 확대(21.8)
1월 1일, 현충일	대체공휴일 미운영	

개정안과 같이 공휴일을 날짜 지정제가 아닌 요일 지정 휴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공휴일은 ‘월요일’로 지정되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중복되는 일이 없게 되므로 공휴일 수 감소라는 날짜지정제의 단

2) 제388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2021.6.16.
제388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2021.6.17.
제388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2021.6.22.

점을 보완하여 국민의 휴식권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으며 연휴 조성을 통한 소비진작 등 정책활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미국은 1971년 시행된 「월요일공휴일법(Monday Uniform Holiday Act)」을 통해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로 변경하였으며, 일본도 2000년 'Happy Monday'를 도입하여, 4개 공휴일에 대해 요일지정 공휴일제를 도입하였음.

<해외의 요일제 공휴일 운영 현황>

구분	공휴일 수	공휴일내역	적용범위
영국	8일	①1월 1일(신년일) ②성 금요일(부활절 전 금요일) ③부활절 다음날(Easter Monday) ④5월 첫째 월요일(5월 초 은행휴일) ⑤5월 마지막 월요일(춘계 은행휴일) ⑥8월 마지막 월요일(8월 은행휴일) ⑦12월 25일(크리스마스) ⑧12월 26일(Boxing Day)	잉글랜드 기준이며,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일부 공휴일이 다름
미국	10일	①1월 1일(신년일) ②1월 세 번째 월요일(마틴루터킹 탄생일) ③2월 세 번째 월요일(워싱턴 탄생일) ④5월 마지막 월요일(현충일) ⑤7월 4일(독립기념일) ⑥9월 첫 번째 월요일(노동절) ⑦10월 두 번째 월요일(콜롬버스의 날) ⑧11월 11일(재향군인의 날) ⑨11월 넷째 목요일(추수감사절) ⑩12월 25일(크리스마스) ※ 대통령선거 후 첫째 1월 20일(4년에 한번) ※ 뉴욕주12일, 알래스카주11일, 와이오밍주9일	연방기관, 연방과 관련된 기관(은행, 우체국 등) ※연방공휴일의 州또는 민간기업적용은 州와 민간기업 의사에 따름
프랑스	11일	①1월 1일(신년일) ②부활절 월요일(Easter Monday) ③5월 1일(노동절) ④5월 8일(2차 대전 승전기념일) ⑤승천 대축일(5월중 1일) ※ 부활절(일)로부터 40일째(목) ⑥성신 강림일(6월중 1일) ※ 부활절(일)로부터 50일째(월) ⑦7월 14일(혁명기념일) ⑧8월 15일(성모승천축일) ⑨11월 1일(만성절) ⑩11월 11일(1차 대전 휴전일) ⑪12월 25일(크리스마스)	관공서와 민간 공통

구분	공휴일 수	공휴일 내역	적용 범위
독 일	10일	① 1월 1일(신년일) ② 성 금요일(부활절 전 금요일) ③ 부활절 다음 월요일 ④ 5월 1일(노동절) ⑤ 예수승천일(5월 중 1일) ⑥ 성령강림일(6월 중 1일) ⑦ 10월 3일(통독기념일) ⑧ 10월 31일(종교개혁일) ⑨ 12월 25일(크리스마스) ⑩ 12월 26일(크리스마스 다음날)	법정 연방공휴일은 통독기념일이 유일하고, 그 외는 각 州정부에서 정한 휴일임
일 본	16일	① 1월 1일(元日) ② 1월 둘째 월요일(성인의 날) ③ 정령으로 정하는 날 2월 11일(건국기념일) ④ 춘분일 ⑤ 4월 29일(昭和의 날) ⑥ 5월 3일(헌법기념일) ⑦ 5월 4일(녹색의 날) ⑧ 5월 5일(어린이날) ⑨ 7월 세 번째 월요일(바다의 날) ⑩ 8월 11일(산의 날) ⑪ 9월 세 번째 월요일(경로의 날) ⑫ 추분일 ⑬ 10월 두 번째 월요일(체육의 날) ⑭ 11월 3일(문화의 날) ⑮ 11월 23일(근로감사의 날) ⑯ 12월 23일(천황탄생일)	전국민 ※ 00년 'Happy Monday' 도입 4개 공휴일에 대해 요일지정 도입 ※ '녹색의 날'(5.4.)을 지정('07년)하여, 기존 헌법 기념일(5.3.)과 어린이날(5.5.) 간의 징검다리 휴일 해소
호 주	12일	① 1월 1일(신년일) ② 1월 26일(호주의 날) ③ 3월 둘째 월요일(캔버라의 날) ④ 부활절 전 금요일(Good Friday) ⑤ 부활절 전 토요일(Easter Saturday) ⑥ 부활절 다음날(Easter Monday) ⑦ 4월 25일(호주-뉴질랜드 전쟁기념일 Anzac Day) ⑧ 6월 둘째 월요일(여왕 탄신일) ⑨ 3학기 끝난 후 첫째 월요일(가족공동체의 날) ⑩ 10월 첫째 월요일(노동자의 날) ⑪ 12월 25일(크리스마스) ⑫ 12월 26일(Boxing Day)	연방정부 공휴일 : ①②④⑥⑦⑧⑪⑫ 각 州별로 공휴일 다름 ※ 호주 수도자카리아 기준 ※ Western Australia 州 10일 South Australia 州 13일

※ 자료 : 인사혁신처

다만, 개정안 검토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2021.8.) 한글날에 대해서는 대체공휴일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므로,³⁾ 요일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개정취지와 같이 대체공휴일을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날짜지정휴일에서 요일지정휴일로 전환할 때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신정(1월 1일), 3·1 만세운동이 시작된 날(3월 1일), 석가 또는 그리스도의 탄신일(음력 4월 8일, 양력 12월 25일), 광복절(8월 15일) 등 날짜지정휴일과 다르게 ‘날짜에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 휴일이어야 할 것이나,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석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제6호·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제4호·제6호·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한 국경일 중 하나인 한글날은 음력기준의 훈민정음 반포일(음력 9월 10일)을 양력 기준으로 변환해서 1945년 광복 이후부터 지금까지 10월 9일로 기념해온 것을 고려할 때, 요일제로 바꾸는 것은 학계 및 관련 단체와 국민적 공감의 필요한 사항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한글날을 10월 두 번째 월요일로 지정할 경우 3일 연휴가 보장되어 소비진작과 내수시장 활성화는 기대할 수 있으나,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한다는 취지에 따라 날짜를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 개정에는 학계 및 관련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거쳐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9일은 훈민정음 반포일이라는 한글날의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날로 요일제 변경 시 해당 날짜를 기념하는 한글날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주요 한글 관련단체(한글학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외솔회, 한글문화연대) 대상 의견 조취 결과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337